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23. 4. 18.)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한 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갱신 신청 방법, 등록 말소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가맹점을 특정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안 제9조의15 신설)

나. 법 제2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갱신의 신청 등은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절차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17 신설)

다. 법 제26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말소의 절차
등은 등록 말소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인 또는 상인
조직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0 신설)

라. 가맹점 등록 관련 신설된 권한,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와 같이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00. ~ 7. 00.)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의15를 제9조의16로, 제9조의16 및 제9조의17을 각각 제9조의18 및
제9조의19로 하고, 제9조의15, 제9조의17, 제9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말한다.

1. 개별가맹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소속 시장명

나. 점포명

다. 사업자번호

라. 사업형태

마. 사업장 주소

바. 대표자

2.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장명

나. 상인조직 명칭

다. 상인조직 주소

라.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마. 대표자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갱신을 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등록”을 “등록(변경 및 갱신 등록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취소”를 “취소 및 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u> <u>1. 개별가맹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 <u>가. 소속 시장명</u> <u>나. 점포명</u> <u>다. 사업자번호</u> <u>라. 사업형태</u> <u>마. 사업장 주소</u> <u>바. 대표자</u> <u>2.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 <u>가. 시장명</u> <u>나. 상인조직 명칭</u> <u>다. 상인조직 주소</u> <u>라.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u> <u>마. 대표자</u>
<u>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u> (생략)	<u>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u>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u> <u>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u> <u>등록갱신을 하려는 상인 또는 상</u> <u>인조직은 중소기업부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u> <u>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u> <u>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u> (생 략)	<u>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u> (현행과 같음)
<u>제9조의17(지원 중단의 기준 등)</u> (생 략)	<u>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u>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u> <u>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u> <u>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u> <u>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u> <u>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통지하여</u> <u>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u> <u>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u>
<u>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기업</u> <u>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u> <u>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u> <u>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u> <u>위임한다.</u>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u>등록</u>	<u>제33조의2(권한의 위임) -----</u> ----- ----- ----- -----. 1. ----- <u>등록(변경 및 갱신 등록을 포함</u> <u>한다)</u>

2.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u>취소</u> <u><신 설></u>	2. ----- --- <u>취소 및 말소</u>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연 락 처	(044) 204 - 7900